



충남 · 세종의 대표 국립대학교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2021. 4.



국립 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1. 입학전형 일정	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5
3-1.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5
가. 재외국민	5
3-2. 정원 제한 없는 전형	9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9
나. 북한이탈주민	10
4. 지원 절차 및 방법	11
5. 제출 서류	12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15
7. 합격자 발표	16
8. 합격자 등록	16
9. 전형료	17
10. 지원자 유의사항	18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 각종서식	20

1.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접수	2021. 7. 5.(월) 10:00 ~ 7. 9.(금)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 ※ 온라인 원서접수만 실시
서류 제출	2021. 7. 5.(월) 10:00 ~ 7. 23.(금) 18:00까지 도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 입학과 (대학본부 209호)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제출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직접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 자격 미달로 처리함 ※ 제출 서류 도착 확인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및 도착 확인을 바람
면접고사	2021. 8. 26.(목)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고사 실시 이전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를 통해 면접 장소 공고 ※ 개별 통보 하지 않음. ※ 면접고사 시 신분증, 수험표 지참 ※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전화) 면접 실시
최초합격자 발표	2021. 12. 16.(목) 18:00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 (개별 통보 없음)
최초합격자 문서등록	2021. 12. 17.(금) 09:00 ~ 12. 20.(월) 16: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없이 문서등록을 적용 ○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예치금 납부는 없음)
충원합격자 발표	2021. 12. 21.(화) ~ 2021. 12. 27.(월) 21:00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원합격자는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차수별 공고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에 공고(개별 통보 없음)
충원합격자 문서등록	2021. 12. 22.(수) ~ 12. 2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예치금 납부는 없음)
합격자 최종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09:00 ~ 2. 11.(금)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직접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상기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에 공고함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안내

- 1) 재외국민 전체 모집인원은 모집단위 구분 없이 2022학년도 입학정원[첨단분야 모집단위 제외]의 2%이내(54명)이며,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 제외)
- 2)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원 외 모집인원이 제한되므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을 하지 않음

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단위: 명)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공주 캠퍼스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 사회계	영어영문학과	32	3명 이내	
			중어중문학과	36	3명 이내	
			불어불문학과	24	2명 이내	
			독어독문학과	24	2명 이내	
			사학과	23	2명 이내	
			지리학과	24	2명 이내	
		인문· 사회계	경제통상학부	52	5명 이내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과	29	2명 이내	
			관광경영학과	34	3명 이내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34	3명 이내	
			행정학과	33	3명 이내	
			법학과	31	3명 이내	
			사회복지학과	31	3명 이내	
		단과대학 소계			407	
	자연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34	3명 이내	
			응용수학과	33	3명 이내	
			화학과	33	3명 이내	
			생명과학과	35	3명 이내	
			지질환경과학과	31	3명 이내	
			대기과학과	32	3명 이내	
			문화재보존과학과	19	1명 이내	
			의류상품학과	19	1명 이내	
		예·체능계	생활체육지도학과	17	1명 이내	
		단과대학 소계			253	
	간호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6명 이내	
보건행정학과			36	3명 이내		
응급구조학과			26	2명 이내		
의료정보학과			27	2명 이내		
단과대 소계			153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천안 캠퍼스	예술대학	예·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3명 이내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명 이내	카툰믹스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무용학과	22	2명 이내		
			영상학과	31	3명 이내		
	단과대학 소계			170			
	본부소속	자연계	국제학부	26	2명 이내	국제금융공학전공	
	천안 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148	14명 이내	전기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나노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30	3명 이내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28	2명 이내	
				컴퓨터공학과	45	4명 이내	
소프트웨어학과				44	4명 이내		
기계자동차공학부				129	12명 이내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미래자동차공학과				30	3명 이내		
사회환경공학과				44	4명 이내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25	2명 이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32	3명 이내	(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32	3명 이내		
화학공학부				68	6명 이내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신소재공학부				73	7명 이내	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	
산업디자인공학부				37	3명 이내	제품디자인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환경공학과				32	3명 이내		
산업시스템공학과				28	2명 이내		
광공학과				27	2명 이내		
금형설계공학과				19	1명 이내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2명 이내		
단과대학 소계				896			
본부소속	자연계	인공지능학부	35	3명 이내			
예산 캠퍼스	산업과학 대학	인문· 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18	1명 이내		
			부동산학과	18	1명 이내		
			산업유통학과	18	1명 이내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30	3명 이내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원예학과	32	3명 이내	
			동물자원학과	31	3명 이내	
			지역건설공학과	24	2명 이내	
			스마트팜공학과	24	2명 이내	
			산림과학과	32	3명 이내	
			조경학과	24	2명 이내	
			식품영양학과	25	2명 이내	
			외식상품학과	18	1명 이내	
			식품공학과	23	2명 이내	
			특수동물학과	25	2명 이내	
			스마트수산자원학과	25	2명 이내	
		단과대학 소계		367		
합 계					54명 이내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및 북한이탈주민전형은 모집인원 제한 없음

※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의 경우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54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

※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202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에 공고할 예정임

《 2022학년도 변경 사항 》

주요 변경 항목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단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신설 스마트수산자원학과 신설
모집단위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라믹디자인학과 주얼리디자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모집단위 분리 및 신설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스마트정보기술공학전공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소프트웨어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3-1.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가. 재외국민

1) 기본 학력조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국내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2) 일반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①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학기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		
②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학기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학기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학생 재학 기간의	3년	학생 재학 기간의	학생 재학 기간의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학기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3/4 이상	3년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학기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⑥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3년 이상 거주(근무)하고 귀국한 사람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인정범위: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단, 해외선교활동, 외국유학연수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가능	3년		3년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세부지원자격 적용

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해외체류기간 인정함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해외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 근무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 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 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재학기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 -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기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	----------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중복학기 G7-1로 G9-1 G11-1학제차이로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해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영주교포 자녀의 범위

- 부·모·학생 모두가 해당국의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단,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는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재외국민등록필증 [부, 모, 학생]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해외 근무자 등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 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자영업자 및 현지회사 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을 교부받아 사업을 한 자(직원은 제외함) - 현지회사 직원: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법인)을 발급받아 사업을 한 자 및 직원
해외 근무자 등의 근무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부모의 근무기간, 영주기간, 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 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함(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기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해외 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 (기간) 학교(학생)의 휴교 기간 및 직장(해외근무자)의 휴업 기간 ○ (적용) 휴교기간은 학생 재학 기간 및 체류기간, 해외근무자와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기간에, 휴업기간은 해외근무자 재직 기간으로,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음

3-2. 정원 제한 없는 전형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기본 학력조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일반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12년	12년	12년	-	-	-	-	-

- 3) 어학 자격기준: 외국인은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 졸업 시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함
 ※ 외국인은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4)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분	주요 인정 기준		
재학기간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	----------

□ 무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추후 확인 시 입학취소)

□ 보호자 등의 조건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나. 북한이탈주민

1) 기본 학력조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2) 일반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4. 지원 절차 및 방법

- 수시모집에서 6회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되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21. 7. 9.(금) 17: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입학지원서 입력



입력사항 확인



전형료 결제



지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접수 완료



관련 서류 제출

○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 공고
※ 접수기간: 2021. 7. 5.(월) 10:00 ~ 7. 9.(금) 17:00

○ 원서접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존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는 곧바로 로그인)

○ 칼라사진 첨부(업로드)[면접고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사항]
○ 수험생 유의사항,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확인

○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원서의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형료 결제
※ 전형료 결제 완료 후(인터넷 접수가 완료) 내용 수정 및 취소 불가

○ 결제 완료 후 지원서, 수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출력
※ 수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확인

○ 관련 서류는 우편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대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2021. 7. 23.(금)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우)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9호)

5. 제출 서류

가.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목록

(○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자 제출)

제출서류명	지원 자격								정원 제한 없는 전형	
	입학 정원의 2%이내 전형(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학원 자녀	자영업, 현지회사 직원의 자녀	해외 파견 교직원의 자녀	외국유학 연수자의 자녀, 선교사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	○	○	○	○	○	○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	○	○	○	○	○	○	○	○	○
[서식 3] 자기소개서(한글 작성)	○	○	○	○	○	○	○	○	○	○
[서식 4] 자격심사신청서(한글 작성)	○	○	○	○	○	○	○	○	○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국내·외 초·중·고 재학증명서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국내·외 초·중·고 성적증명서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	○	○	○	○	○	○	○	-
주민등록 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서식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영주권 사본	○ (부모학생)	-	-	-	-	-	-	-	-	-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	-	-	-	-	-	-	-	-	○ (외국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재외국민 학생)	-
정부 초청·추천 증명서	-	-	-	-	○	-	-	-	-	-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해외근무경력 명시)	○	○	○	○	○	○ (현지회사)	○	○	-	-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해당 종교 재단 발행, 파송기간 연월일 반드시 명기)								○ (선교사)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외국환은행 원본대조필)	-	-	○	-	-	-	-	-	-	-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 및 체류기간 중 해당국 세금납부 증명(법인세 납부이력)서(자영업자 또는 법인)	-	-	-	-	-	○	-	-	-	-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해당자)	-	△	△	△	△	△	△	△	-	-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	-	-	-	-	-	-	-	△ (외국인)	-
재정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	-	-	-	-	-	-	△ (외국인)	-
어학능력 입증서류	-	-	-	-	-	-	-	-	○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사군구청 발행)	-	-	-	-	-	-	-	-	-	△
학력 인정 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	-	-	-	-	○
[서식 6] 사유서(필요시 작성)	△	△	△	△	△	△	△	△	△	△

※ 추후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①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재외국민)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1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2 [서식 2] 입학원서		
	3 [서식 3] 자기소개서		
	4 [서식 4] 자격심사신청서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5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국내·외 초·중·고 재학증명서	- 재학기간 명기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7 국내·외 초·중·고 성적증명서	- 재학기간 명기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8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 해당 외국학교의 홈페이지 출력물(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	
	9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영주교포자녀는 미 제출	
	10 여권 사본(부,모,학생)	- 소지인의 서명, 국적 및 사진 부분 복사	
	11 [서식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2 서식[서식 5] -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 위임장(발급·열람대상자) 부분만 작성(기타 출입국 조회기간, 위임장의 연월일 기재 금지)	
	12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13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학생)	-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14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 본사 인사권자 발행(선교사 자녀: 종교 재단 발행, 파송 기간 연월일 반드시 명기) - 외국 근무경력기간 반드시 명기 -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 추가 제출 가능	
	15 [서식 6]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 해당자에 한함	
추가 서류	영주교포자녀	1 주민등록 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2 영주권사본(부,모,학생)	- 재외공관장 확인 - 영주권 취득일 반드시 명기
	해외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 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	- 국내은행권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1 정부초청·추천 증명서	
		자영업자 자녀	1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2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자녀간 중에 한함)	- 자영업자: 개인 소득세 납부영수증
	현지회사 자녀	1 재직회사의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원본대조필 사본(대표자 성명 필요) - 사업기간 명기
		2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자녀간 중에 한함)	-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 영수증
	외국유학 연수자 자녀	1 해외유학 사실증명서(보호자)	- 석사과정 이상만 인정
		2 여권 상의 유학비자 사본(보호자)	

② 정원제한 없는 전형(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2 [서식 2] 입학원서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3 [서식 3]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4 [서식 4] 자격심사신청서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초·중·고 재학증명서	- 재학기간 명기
	7 초·중·고 성적증명서	- 재학기간 명기
	8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 해당 외국학교의 홈페이지 출력물(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
	9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주민 학생 및 외국인 지원자 본인만)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0 여권 사본(학생)	- 소지인의 서명, 국적 및 사진 부분 복사
	11 [서식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학생)	-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2 서식[서식 5] -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 위임장(발급·열람대상자) 부분만 작성 (기타 출입국 조회기간, 위임장의 연월일 기재 금지)
	12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13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	- 외국인만 해당
	14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국민 학생)	-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15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 해당자에 한함
	16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 해당자에 한함
	17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증서류 (외국인)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18 [서식 6]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 해당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1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2 [서식 2] 입학원서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3 [서식 3]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4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발행
	5 북한이탈주민 교육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시군구청 발행
	6 학력 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명서	-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 발행
	7 [서식 6] 사유서	- 필요시 작성

다.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 1) 제출서류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자기소개서, 자격심사신청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사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제출서류 내용을 체크리스트[서식 1]에 체크하고 서명 후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표지를 부착하여 발송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증빙 및 추가서류를 의미함

- 2) 필요한 서류는 지정기일까지 우리대학 지정장소로 등기우편, 택배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2021. 7. 23.(금) 18:00까지(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9호) 우)32588
 - 직접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서류접수 후 미 충족 서류 보완 요구 시 우리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라.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 2) 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같음함)
- 3) 2022. 2. 28.까지 포함해야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는 지원자 졸업증명서 및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지원 자격 서류를 추가로 2022. 2. 28.(금)까지 입학본부로 제출하여야 함(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같음함)
- 4) 코로나-19,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지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서식 6]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5)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상장, 수상메달, SAT 성적)등은 제출이 불필요함
- 6) 본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가. 전형 방법

구분	모집단위	서류 자격심사	면접고사	비고
전 전형	전 모집단위 (사범계열 제외)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100점(100%)	※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전화) 면접 실시 ※ 학과(부)장 책임 하에 실시

- 수험생은 면접고사 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비대면 화상(전화) 면접은 정해진 시간 내 자리 이석 등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고사 미응시로 불합격 처리함
- ※ 비대면 화상(전화) 면접 세부방법은 면접고사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나. 선발 원칙

- 1) 모집단위별 선발 가능인원의 범위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적정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함
- 2) 지원 자격 미달자, 면접 고사 결시자(미응시자), 면접 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 4)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7.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일정

- 1) 최초 합격자: 2021. 12. 16.(목) 18:00 이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하지 않음)
- 2) 총원 합격자: 후보자가 있을 경우 별도 공고함

나. 합격자 발표 방법

- 1) 합격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 하지 않음
- 2)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8. 합격자 등록

가. 합격자 문서등록

- 1) 합격자는 문서등록을 적용(예치금 납부 없음)
- 2) 문서등록 기간
 - 최초 합격자: 2021. 12. 17.(금) 09:00 ~ 12. 20.(월) 16:00
 - 총원 합격자: 2021. 12. 22.(수) ~ 12. 28.(화)
- ※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세부 일정은 추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없음)
- 3) 문서등록 방법: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예치금 납부 없음)
- 4)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 후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 문서등록 및 최종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처리되며, 문서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자 최종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나. 합격자 최종 등록

- 1) 납부 금액: 미책정(학사 일정에 따라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 후 별도 공고)

« 2021학년도 기준 신입생 등록금 »

- 인문·사회계열: 1,599,000원
- 인문·사회계열(상업정보교육과): 1,929,000원
- 자연계열: 1,940,000원
- 자연계열(수학교육과): 1,610,000원
- 예·체능계열 및 공학계열: 2,115,000원

- 2) 납부 기간: 2022. 2. 9.(수) 09:00 ~ 2. 11.(금) 16:00

- 3) 납부 방법: 공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개별 통보 하지 않음)

※ 장학금 등의 면제로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합격자발표시스템에 장학등록(0원 납부)을 처리하여야 등록으로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다. 등록포기

- 1) 수시(재외국민전형 포함)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 타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함
- 2) 등록포기 절차: 추후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에 공고

9. 전형료

가. 전형료: 60,000원(1단계 서류전형: 30,000원, 2단계 면접전형: 30,000원)

- 1)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전형료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 2)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아래 사유 외에는 전형료 환불 불가

나.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 ※ 증빙서류를 2021. 8. 30.(월)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환불함
- 5)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 자(1단계 서류전형 탈락자): 2단계 면접 전형료에 해당하는 30,000원을 반환
-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반환 계좌로 반환하며, 면접 대상자로 선발된 자(1단계 합격자)가 면접에 불참할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별로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2022년 4월 30일까지)

- 1)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 선택 시 정확한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 2)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 지원자 유의사항(고등교육법 기본사항 및 대학별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사항

- 1)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 6회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취소됨
- 3)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자(문서등록 및 예치금 납부자 포함)가 있는 경우 등록기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입학이 무효로 됨
- 4) 전형 종료 후 신입생의 지원·등록 현황을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 지원, 이중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며 입학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함

나. 대학별 유의사항

- 1) 합격자 발표 전 혹은 발표 후에도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음
- 2) 1)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반환함
- 3) 본교 및 타 대학에서 1)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4)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기한까지 미도착한 경우 및 본 요강의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지원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6) 지정된 등록기간에 미등록(문서등록 포함)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 7)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8) 지원자는 수험기간 중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ongju.ac.kr>) 게시·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9) 면접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고사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바람
 - ※ 면접고사 장소는 추후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함
- 10) 수험생은 면접고사장 내에서 이동전화 등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음
- 11)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수험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대학교 입학본부(041-850-0111)에 반드시 알려야 함
- 12) 학부 단위로 입학한 경우 재학 중 대학이 정한 소정의 배정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함
- 13) 향후 진로와 관련된 신체검사 결격 예상 판정 기준 안내
 - 신체검사는 미 실시하지만,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신체검사 결격기준에 유의하여 지원해야 함

대 상	결격예상 판정기준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의료법 제8조의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응급구조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보건행정학과 의료정보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위 신체검사 결격 예상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이 당해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되면, 학업 이수나 해당 분야 진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시기 바람
- 1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 15)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 주소: 우편번호)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9호)
 - ※ 전화번호: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 ☎ (041)850 -0111, FAX: (041)850-8903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

- 1) 수집 및 이용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고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해외수학 및 체류기간, 환불계좌 등
- 2) 수집 및 이용 목적: 입학(입시 통계 포함), 학사, 장학, 생활관생 선발, 학생 복지(건강관리 등) 및 입학관련 안내를 위한 자료
- 3) 보유 및 이용기간: 처리목적의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함
- 4) 공유 및 제공: 위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나. 입학 지원으로 학적조회 및 거주사실 확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서식 1]

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재외국민)]

지원자격 구분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공통서류	1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 [서식 2] 입학원서				
	3 [서식 3] 자기소개서				
	4 [서식 4] 자격심사신청서				
	5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국내·외 초·중·고 재학증명서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7 국내·외 초·중·고 성적증명서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8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9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영주교포자녀 제외)				
	10 여권 사본(부,모,학생)				
	11 [서식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12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13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학생)				
	14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15 [서식 6]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추가 서류	영주교포자녀	1 주민등록 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2 영주권사본(부,모,학생)			
	해외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 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1 정부초청·추천 증명서		
	자영업자 자녀	1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2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자격기간 중에 한함)			
	현지회사 자녀	1 재직회사의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2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자격기간 중에 한함)			
외국유학 연수자 자녀	1 해외유학 사실증명서(보호자)				
	2 여권 상의 유학비자 사본(보호자)				
기타서류	1 예) 조기졸업 증명서류				
	2 예) 개명 증명서류				
	3				

- 반드시 모집요강 11~14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 [서식 1~6]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기타서류는 조기졸업, 개명 증명서류 등 수기 작성하여 제출

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구분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	[서식 2] 입학원서			
	3	[서식 3] 자기소개서			
	4	[서식 4] 자격심사신청서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초·중·고 재학증명서			
	7	초·중·고 성적증명서			
	8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9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주민 학생 및 외국인: 지원자 본인만)			
	10	여권 사본(학생)			
	11	[서식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12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13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			
	14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국민 학생)			
	15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16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17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증서류(외국인)			
	18	[서식 6]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북한이탈주민	1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	[서식 2] 입학원서			
	3	[서식 3] 자기소개서			
	4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	북한이탈주민 교육대상자 증명서			
	6	학력 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7	[서식 6] 사유서			
기타서류	1				
	2				
	3				

- 반드시 모집요강 11~14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 [서식 1~6]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서식 3]

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Self-introduction)

지원자 인적사항

수험번호	
------	--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지원사항	대학		학부(과)
출신고등학교명			

자기소개(한글 작성)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4. 자신의 진로 목표를 중심으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상기 내용은 사실이며,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

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심사신청서

(예시)

1. 지원자격

영주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재외국민, 결혼이주민	외국인	

※ 해당란에 ○표

2. 지원자 인적사항

모집단위	영어영문학 과(부)	수험번호	
성 명	김공주	성 별	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국 적	대한민국
출신고등학교	○○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고3) 학기 개시일	2019.3.2

3.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김고마	관 계	부	직 업	회사원
직 장 명	(주)○○○○사			직 위	과장
주 소	○○시 ○○구 ○○로			전 화	○○○-○○○○-○○○○
본사 인사부서 주소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

4. 해외학교 기재란 (한국에 소재한 학교는 미기재)

구 분	학 교 명	출 신 학 교 연 락 처			
		주 소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초등학교	○○초				
중학교	○○중				
고등학교	○○고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화 및 팩스번호는 국가 및 지역번호까지 기재

6. 부모 (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경력증명서, 지원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	--------	------

구 분	외국 근무 및 거주 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 종료시는 ▲ 표시												
	근무기간	거주기간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	~															
	~	~															
모(母) 성 명 ()	~	~															
	~	~															
	~	~															
	~	~															

※ 거주기간 : 재학 또는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기간

※ 근무기간 :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 상기 작성된 수학기간기록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수학기간 인정 및 해석은 본교의 해석에 의함

※ 상기 작성된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 거주기간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수학기간 인정 및 해석은 본교의 해석에 의함

[서식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